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(2판)

2020. 5. 27.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목 차

I. 업 무 (9분야)	
1. 일할 때	
1-1. 사업장	3
1-2. 회의	6
1-3. 민원창구	7
1-4. 우체국	10
1-5. 국내출장	12
1-6. 방문서비스	13
1-7. 콜센터	16
1-8. 건설업	19
1-9. 은행지점	22
Ⅱ. 일 상 (13분야)	
1. 이동할 때	
1. 이동발 때 1-1. 대중교통	27
1-2. 여객선(국제·연안) ······	
1-2. 역적진(국제·원원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29
\cdot \cdot $ \cdot$	22
	33
3. 공부할 때	27
3-1. 학원·독서실 등	37
4. 쇼핑할 때	44
4-1. 대형유통시설(백화점, 대형마트 등)	41
4-2. 전통시장	44
4-3. 중소슈퍼	46
5. 특별한 날	
	51
5-2. 장례식장	54
5-3. 산후조리원	56

목 차

6. 종교생활 6-1. 종교시설 61 7. 병·의원 갈 때 7-1. 병·의원(외래진료 및 면회) 65 8. 에어컨 사용할 때 8-1. 에어컨 사용 69
Ⅲ. 여 가 (19분야)
1. 여행할 때
1-1. 호텔·콘도업 73
1-2. 유원시설 75
1-3. 야영장 77
1-4. 동물원 79
1-5. 국립공원 81
1-6. 해수욕장 84
2. 여가 등
2-1. 야외 활동 89
2-2. 공중화장실 등 90
2-3. 이·미용업 93
2-4. 목욕업 95
2-5. 도서관 97
2-6. 공연장 99
2-7. 영화상영관 101
2-8. 박물관·미술관 103
2-9. 야구장·축구장 105
2-10. 노래연습장 107
2-11. 실내체육시설 109
2-12. 피시(PC)방 ······ 111
2-13. 유흥시설 113

< 지침별 담당부처 연락처 >

지침명	소관부처	연락처
、えつ	중앙사고수습본부	044-202-3805
▶총괄	중앙방역대책본부	043-719-9081
▶사업장·회의	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	044-202-7744
▶ 민원창구	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	044-205-2441
▶우체국	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(과기정통부)	044-200-8832
▶ 국내출장·방문서비스·콜센터	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	044-202-7744
▶건설업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044-201-3546
▶은행지점	금융감독위원회 은행과	02-2100-2951
▶ 대중교통	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	044-201-3786
▶여객선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·연안해운과	044-200-5718, 5738
▶ 음식점·카페/스터디카페	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	043-719-2054
▶학원·독서실 등	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	044-203-6380
▶대형유통시설	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	044-203-4381, 4383
▶전통시장	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	042-481-4581
▶ 중소슈퍼	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	042-481-4490
▶결혼식 등 가족행사	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	02-2100-6363
▶장례식장	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	044-202-3473
▶ 산후조리원	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	044-202-3398
▶ 종교시설	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	044-203-2317
▶ 병·의원	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	044-202-2471
▶ 호텔·콘도업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	044-203-2871
▶ 유원시설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	044-203-2863
▶ 야영장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	044-203-2866
▶ 동물원	환경부 생물다양성과	044-201-7244
▶국립공원	환경부 자연공원과	044-201-7313
▶해수욕장	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044-200-5254
▶야외 활동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	044-203-2888
▶ 공중화장실 등	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	044-205-3545
▶ 이·미용업	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	044-202-2881
▶ 목욕업	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	044-202-2881
▶도서관	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	044-203-2612
▶ 공연장	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	044-203-2732
▶ 영화상영관	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	044-203-2432
▶박물관·미술관	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	044-203-2638
▶ 야구장·축구장	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	044-203-3153
▶노래연습장	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	044-203-2464
▶실내체육시설	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	044-203-3156
▶ PC방	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	044-203-2446
▶ 유흥시설	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	043-719-2054

Ⅰ. 업 무 (1. 일할 때)

1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사업장

1 노동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구호외치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근무 중 발열,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
- o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 적극 활용하기
- o 국내·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
- o 위크숍, 교육,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,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,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
- o 개인 찻잔·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
- ㅇ 손이 자주 닿는 곳(탁자, 키보드, 마우스, 전화기 등) 주기적으로 소독하기
- ㅇ 사무실, 작업장 등을 화기하기
- ㅇ 소규모 모임, 동아리 활동, 회식 등은 자제하고,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
-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
-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
-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
- o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

2 사업주

[공통사항]

- o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(관리자)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 들기
- o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,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, 병가·연차휴가·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*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
- o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
-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
- ㅇ 국내·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
- ㅇ 위크숍, 교육,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,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

경우 체온측정, 마스크 착용, 소독용품 비치하기

- 모니터·책상·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유지하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구호외치기 등) 유도하지 않기
- o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
- o 개인용 청소·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
-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·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
- ㅇ 손씻기, 손 소독제 사용,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
-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
-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

1-2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회의

① 일반 수칙

- ㅇ 가급적 영상회의,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기
- ㅇ 영상회의,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
- o 대면회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
- ㅇ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

② 대면회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

- 사전에 발열, 호흡기 증상(인후통(목아픔), 기침, 호흡곤란, 권태감, 두통, 근육통 등)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
- o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자제하기
- o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
- ㅇ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,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하기
- ㅇ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,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
- o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하기
- o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,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
- o 2m(최소1m)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회의를 자제하기
-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
- *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따라 착용

1-3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민원창구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ㅇ 민원인 또는 직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1. 근무자

- o 근무자에게 발열 및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, 이 경우 '재택근무' 또는 '공가' 처리하기
 - * 해당 공무원은 3~4일간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근
- ㅇ 근무 중 2회이상 체온 등 체크 ⇒ 이상 증상자는 보건당국 상담후 조치에 따름
- 확진자 발생 시 출입자 동선 파악 등에 대비하여 이상 징후자 파악 보고 체계 확립 및 복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하기
- o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대체 인력 확보하기

2. 민원창구

- ㅇ 민원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하기
-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(민원접수대, 무인민원발급기, 공용공간, 화장실 등), 손이 닿는 출입문 등 수시 소독하기
- 민원실·공용공간 등 주2회 이상 소독, 바닥 청소 시 소독제 사용하기
- * 소독제 및 소독방법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」참조
- 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·시행 :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,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1회용 마스크 제공, 중앙현관을 제외한 출입문 폐쇄 등
-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발열 체크, 발열자 대기실 마련(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)하기
-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, 자동문을 개방하거나 출입문 일원화 등 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시행하기
- ㅇ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
- 유관기관(보건소, 경찰서, 소방서, 의료기관 등)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하기
- 민원실내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공가 대기하기

- 민원실내 확진자 발생시 즉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고, 시설 일시폐쇄, 출입금지, 격리,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
- * 구체적인 사항은 「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」(중대본-125, 3.6.) 참고
- 민원서류발급은 "정부24·무인민원발급기·전자증명서" 이용 안내 활성화하여 가급적 대면 민원처리를 최소화하기

3. 민원창구 근무자 및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·홍보

- o 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, 손씻기,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하기
- o 손씻기,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*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하기
 - *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게시된 자료 활용
 - * 방역 및 소독관련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-19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(제3판)」(방대본·중수본,3.25)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-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(제3-1판)」(방대본·중수본.4.2) 참조

1-4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우체국

① 이용자·방문객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가능한 한 금융업무는 스마트 뱅킹,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, 우체국 방문하여 금융 업무시 ATM 기기 활용하기
- o 우편 업무로 방문 시 무인우편접수기 이용하기(설치우체국 한함)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식사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(한 방향 보기, 띄워 앉기, 지그재그 앉기 등 가능하도록 스티커 등 표시)하기
- o 타 부서 방문 및 충간 이동 자제,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 지양, 대면대화 자제하고 내선전화 또는 내부전용 메신저 이용하여 의사소통, 비대면 결재 활성화하기
- o 대규모 행사, 공동 활동 등 최소화, 교육 및 회의 계획 시 온라인 교육·회의 활성화하기
-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
- o 개인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 및 협조 요청하기
- 스마트 뱅킹, 인터넷 뱅킹, ATM기기, 무인우편접수기 이용 안내하기

1-5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국내출장

[] 일반 수칙

- ㅇ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
- ㅇ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곳으로 출장 자제 또는 연기
- o 출장 인원, 소요시간, 경로를 최소화하기
- o 출장자는 출장 전 스스로 체온 확인하고, 발열(37.5℃) 및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하기
- ㅇ 출장자는 손씻기,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
- ㅇ 출장 중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출장 중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② 국내 출장 중 준수 사항

- ㅇ 공용·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버스, 지하철,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
- o 출장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신체 접촉 자제 및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보기
- o 출장 중에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등이 있는 아픈 사람과 가급적 접촉하지 않기
-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, 대화 자제,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
- ㅇ 출장 업무 외 소규모 모임, 회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기
- ㅇ 출장 업무 외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기
- o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와 방을 같이 쓰지 않기
- ㅇ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퇴근하기
- o 출장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콜센터(☎ 1339, ☎ 지역번호 +120)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기
- ※ 출장 중 회의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1-6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방문서비스

1 노동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구호외치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사무실 출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, 노동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,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스스로 체온 확인하기
- ㅇ 근무 중 발열,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
- ㅇ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 적극 활용하기
- o 위크숍, 교육,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,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,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
- ㅇ 고객과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,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고객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 연기
- o 공용·개인 차량 이용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
- o 공용·개인 차량의 내부(운전대, 기어손잡이 등), 업무용품(무선카드단말기, 펜 등)을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기
- ㅇ 버스, 지하철,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
- o 현장 결제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(모바일페이, QR코드, NFC카드, 신용카드 등)을 활용하기
- ㅇ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, 대화 자제,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
- ㅇ 소규모 모임, 동아리 활동, 회식 등은 자제하고,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

② 이용자(고객)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구호외치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방문노동자와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,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자가격리 중이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방문노동자 방문 일정 연기하기
- o 온라인 사전 결제 등을 적극 활용하되, 현장 결제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(모바일페이, QR코드, NFC카드, 신용카드 등)을 활용 하기

③ 사업주

[공통사항]

- o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(관리자)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
- 발열, 호흡기증상이 있거나,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병가·연차휴가·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★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
- 아 사무실 출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
-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
- o 위크숍, 교육,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,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, 마스크 착용, 소독용품 비치하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 등) 유도하지 않기
- ㅇ 가급적 비대면으로 서비스 제공하기
- ㅇ 버스, 지하철,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
- ㅇ 공용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기
- o 온라인 사전 결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되, 현장 결제시 전자 결제방식(모바일페이, QR코드, NFC카드, 신용카드 등)을 활용하도록 하기
-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, 대화 자제,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안내하기
- o 마스크, 휴대용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하거나 구입 할 수 있게 지원하기
- ㅇ 손씻기, 손 소독제 사용,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

1-7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콜센터

① 노동자

[공통사항]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구호외치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- o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
- ㅇ 근무 중 발열,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
- ㅇ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 적극 활용하기
- ㅇ 재택근무,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동시 근무인원 최소화하기
- o 국내·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
- o 위크숍, 교육,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,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,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
- 0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기
- 사무실 내 환기, 노동자 간 간격 및 가림막 등 설치를 준수한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따라 착용
- o 개인 찻잔·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
- ㅇ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)에 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
- o 사무실, 작업장 등을 화기하기
- ㅇ 소규모 모임, 동아리 활동, 회식 등은 자제하고,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
-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
-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
-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

② 사업주

[공통사항]

- o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(관리자)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
- o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,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, 병가·연차휴가·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*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
- o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
-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
- ㅇ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하기
- o 국내·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
- ㅇ 위크숍, 교육,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,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

경우 체온측정, 마스크 착용, 소독용품 비치하기

- o 모니터·책상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유지하기
- 노동자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등 설치(권장 높이: 책상 면에서90cm)하기
- 0 노동자가 고정좌석에서 근무하게 하기
- ㅇ 채팅이나 챗봇 등 비음성 상담 방식을 활용하기
- ㅇ 상담건수,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 주지 않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 등) 유도하지 않기
- o 부서 또는 충별로 점심시간 시차운영 활용하기(예: A부/11:30~12:30, B부 /12:30~13:30)
-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
- o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하기
- o 개인용 청소·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
- ㅇ 마이크 사용 시, 덮개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하기
-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·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
- ㅇ 손씻기, 손 소독제 사용,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
-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
-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

1-8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건설업

① 노동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구호외치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
- ㅇ 근무 중 발열,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
- ㅇ 개인 용품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기
- ㅇ 작업공간을 충분히 화기 후 작업 실시하기
- ㅇ 맨손 또는 작업용 장갑을 낀 채로 얼굴(특히 눈, 코, 입)을 만지지 않기
- o 조회(TBM),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유인물 배포 등을 활용,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,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한 후 가급적 소규모로 실시
- ㅇ 가능하면 작업순서를 조정하여 다수가 밀집하여 작업하지 않기
- ㅇ 소규모 모임, 회식 등은 자제하고,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
- ㅇ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이용하기
-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
-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
- ㅇ 휴게시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

② 사업주(원청 포함)

[공통사항]

- o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(관리자)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ㅇ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
- o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
- o 조회(TBM),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,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체온 측정, 마스크 착용, 소독용품 비치 후 가급적 소규모로 실시하기
- o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가급적 노동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하기
- ㅇ 통풍이 불충분한 작업 공간은 충분히 환기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하기
- ㅇ 작업자의 동선, 같은 장소에서의 작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수립하기
- ㅇ 현장 내 개인청결을 위한 개수대 등을 설치하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 등) 유도하지 않기

- o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운영하기(예: A조/11:30~12:30, B조/12:30~13:30)
-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
- o 개인용 청소·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
- o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·비치하거나 구입 지워하기
- ㅇ 손씻기, 손 소독제 사용,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
-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

1-9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은행지점

①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비대면 채널(스마트뱅킹, 인터넷뱅킹, 폰뱅킹 및 전화상담 등)을 최대한 활용해 은행지점 방문을 최소화하기
- o 은행 지점 방문시 ATM기기를 적극 활용하기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비대면 채널(스마트 뱅킹, 인터넷 뱅킹, 폰뱅킹 및 전화상담, ATM기기 등) 이용 안내하기
- o 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마런·시행하기 : (예 : 은행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,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1회용 마스크 제공,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발열 체크 등)
- o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(은행 창구, ATM기기, 공용공간, 화장실 등), 손이 닿는 출입문 등 수시 소독하기
- ㅇ 창구 직원 대상으로 예방 수칙,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하기

Ⅱ. 일 상 (1. 이동할 때)

1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대중교통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큰소리로 대화, 불필요한 대화, 통화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버스, 지하철, 택시, 기차, 항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
- o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
- o 기차·고속버스·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워(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) 예매하고,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(모바일 체크인 등) 우선하여 이용하기
- ㅇ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
- ㅇ 택시이용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,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활용하기

2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 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대중교통(항공 포함) 이용시 마스크 착용,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기
- ㅇ 환기가 가능한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운영 전후 자주 환기하기
- o 대중교통 밀집도 완화를 위해 혼잡시간대를 수시로 파악하여 유연하게 배차 조정하기
- o 철도, 항공, 고속·시외버스 등 예약 시 창가 우선 배정 등 승객 간 좌석을 띄워 배정하기
- ㅇ 승차권 예약 또는 택시 호출 시 결제방법을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으로 유도하기
- ㅇ 전광판,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이용자 준수 예방수칙 홍보하기

1-2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여객선(국제·연안)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큰소리로 대화, 불필요한 대화, 통화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여객선 승선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o 여객선 이용 직전 또는 이용 중, 의심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지역보건소에 신고하고, 보건당국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별도 격리장소에서 대기하기
- ㅇ 대합실, 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거리 유지하기
- ㅇ 객실 좌석은 가급적 한 칸 띄워 앉기
- ㅇ 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
- ㅇ 연안여객선은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공간에서 대기하기

2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 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터미널 출·입구를 최소한으로 개방하여 이동경로를 단순화하고, 모든 터미널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
- ㅇ 지정좌석제의 경우 좌석간 거리를 두고 한 칸씩 띄워 앉도록 조정하기
- o 연안여객선의 다인실은 일부 다인실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 다인실에 분산 되도록 배치 및 발권 조정하여 거리두기 유지하게 하기
- o 국제카페리선은 개인실 위주로 운영하되, 부득이 다인실로 운영시 침상간 간격을 1~2m이상 두어 이용객 간 거리 조정하기
- ㅇ 여객선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
Ⅱ. 일 상 (2. 식사할 때)

2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음식점·키페/스터디카페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0 식당,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
- o 탁자 사이 간격을 2m(최소 1m) 두고 앉거나,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가격을 띄워 앉기
- ㅇ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
-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
- 0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
-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
- ㅇ 술잔 돌리지 않기

2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

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
-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(최소 1m)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,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
-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
-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
-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
- o 개인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
-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
-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, 집게 등을 제공 하기

Ⅱ. 일 상 (3. 공부할 때)

3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학원 · 독서실 등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실내 휴게실, 카페,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
- ㅇ 마스크 미착용,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
- o 고위험군은 시설이용·방문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o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현조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2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·기기(출입구 손잡이, 컴퓨터 등)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
- ㅇ 강사 등 종사자 강의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
 - *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어야 함
- 주요 공간 일상소독*(최소 2회/일), 대형학원(규모 1,000㎡ 이상)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, 수시 환기 실시(일시·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)하기
 - * 문손잡이,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
- o 단체 식사 제공 금지(단,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음식점·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)하기
- o 노트북,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
-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· 안내하기
-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
- o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* 고위험군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하도록 안내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Ⅱ. 일 상 (4. 쇼핑할 때)

4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대형유통시설

* 백화점·대형마트·복합쇼핑몰·기업형슈퍼마켓·아울렛 등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 2m(최소 1m) 이상의 거리 유지하기
- 0 최소 인원으로 쇼핑하기
- ㅇ 공용 쇼핑카트,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표면을 소독하거나,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
- o 화장품 견본품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 자제(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, 테스트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)하기
- 계산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(모바일페이, OR코드, NFC카드, 신용카드 등)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2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간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종사자의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 확보하기
-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(예: 선 착순, 악수·사인회 등)하기
- 부득이하게 집객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
- o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, 안내방송 및 리플릿 등으로 대체하기
- 0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기
- 시식·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, 컵, 휴지,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하기
- o 입장, 계산 등 대기열에서 이용객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
- 바닥 스티커,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
-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안내하기

- ㅇ 물건을 고르는 고객 등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직원 안내하기
- o 계산원, 접객 직원과 이용객 사이 2m(최소 1m)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 시 투명 카막이 등을 설치하기
- ㅇ 공용 쇼핑카트, 장바구니 근처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손잡이 수시 소독하기
- o 계산 시 가능한 전자·비접촉 결제방식 사용을 권장하기
- o 문화센터,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고,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들 가에 거리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4-2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전통시장

① 이용자·방문객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는 등) 자제하기
- ㅇ 집객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,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4-3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중소슈퍼

①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ㅇ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가 최소화하기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○ 계산대 등 줄을 서는 곳에는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표시하기

Ⅱ. 일 상 (5. 특별한 날)

5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결혼식 등 가족 행사

① 방문객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,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행사 시 탁자 사이를 가급적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두기
- ㅇ 식사시간에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앉기
- ㅇ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
- ㅇ 축의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기
- ㅇ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
- o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협조하기

2 행사주관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석 자제 안내하기
- o 참석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가족 행사는 가급적 검소(간소)하게 준비하거나, 필요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
- ㅇ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 수 정하기
- ㅇ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연기하기
- ㅇ 초청자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
- ㅇ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진행하기
- ㅇ 악수는 자제하고,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기

③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행사 시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(최소 1m)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
- ㅇ 가능한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배치하기

- ㅇ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
- o 직원들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으로 교육 실시하기
-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, 집게 등을 제공하기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하도록 안내하기

5-2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장례식장

□ 조문객·유족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,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기
- o 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
- ㅇ 조문시 가급적 악수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하기
- ㅇ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,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하기
- o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,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, 참여자간 1m 거리의 간격 유지하기
- o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협조하기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

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(최소 1m)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거리 유지하기
- ㅇ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 뒤 사용시간을 일정 시차를 두고 사용하기
- ㅇ 입관 및 발인식에 가능한 최소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
- o 장례식장 직원,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을 공급하는 외부사람들이 개인위생수칙 (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) 준수하도록 안내하기
-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, 집게 등을 제공하기
- ㅇ 사용하지 않는 빈소는 1일 1시간 이상 2회~3회 환기장치 가동하기
- ㅇ 염습실, 참관실 및 발인실 사용 직후 소독하기
- ㅇ 운구차량을 운영할 경우 이용 후 소독하기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하도록 안내하기

5-3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산후조리원

①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- ㅇ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o 영유아가 새로 입실하는 경우 적어도 입실 당일에는 사전관찰실에서 관찰 또는 모자동실하기
- ㅇ 산모 개인물품(개인 물병, 식기류 등) 사용하기
- ㅇ 공동으로 수유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시간 간격 두어 1인씩 이용하기
- o 식당 이용 시 개별로 식사하며,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
- ㅇ 진료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 등을 제외한 외출을 자제하기
-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 외출 일시·장소·사유 등을 기록하기
- 0 1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산모실 환기하기
- ㅇ 면회를 최소화하여 배우자 등 지정된 사람만하기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이용자에게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이용자에게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□ 종사자 관리

- ㅇ 출입 시 사전 위생 확인 등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하기
- ㅇ 근무 중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하기

□ 신생아 및 산모 건강관리

- ㅇ 매일 1회 이상 산모 감염병 의심 증상 확인하기
- o 신생아실, 산모실 및 공용공간의 청결을 유지하고, 가급적 공용물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
- ㅇ 산모 외출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하기

□ 방문객 관리

- ㅇ 면회를 최소화하여 배우자 등 지정된 사람만 하게하기
- ㅇ 방문객 방문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기
- o 방문객 예방 교육 시행: 소독, 마스크(이후 분리 처리), 가운 착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기
- o 방문객 상담은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하기
- ㅇ 불가피하게 산전 교육 진행시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하기

□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

- ㅇ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방문 제한하기
- 식당 이용 시 개별로 식사하며,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
- o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기
- 반드시 필요한 교육(모유 수유 및 신생아 관리 등)은 영상이나 서면 자료 활용 등의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기
- ㅇ 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하기
- o 시설이용자, 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위생수칙 교육·홍보하기
- o 손 씻기,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에 대한 각종 홍보물*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하기
 - *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게시된 자료 활용

Ⅱ. 일 상 [6. 종교생활]

6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종교시설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단체식사는 자제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(한 방향 보기, 띄워 앉기 등)하기
- ㅇ 개인물품(책 등) 사용하기
- ㅇ 공용 차량 이용 시, 손 씻기,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
- ㅇ 온라인 등 비대면 ·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
- o 접촉·대면 모임 자제하기
- 0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o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협조하기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

-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온라인 등 비대면·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, 대규모 행사·단체회합 등은 최소화하기
-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(최소 1m)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·퇴장 시간 분산하기
- ㅇ 마이크 사용 시,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
-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(한 방향 보기, 띄워 앉기 등)하기
- ㅇ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
 -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
- o 공용차량 운행 시,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,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
-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안내하기
- o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,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
-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하도록 안내하기

Ⅱ. 일 상 [7. 병·의원 갈 때]

7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병·의원(외래진료 및 면회)

※ 코로나19 환자·자가격리자 등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외래 방문·면회 시 권고임

1. 외래 진료(예방접종 포함) 시

(1) 병·의원 방문 전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병·의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,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 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기
- o 병·의원 방문 전, 사전 예약하여 대기시가 최소화하기

(2) 병·의원 방문시

- ㅇ 보호자 인원은 최소화하기
- ㅇ 환자와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
- 단 24개월 미만 유아,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,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(마스크 착용한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)
-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, 귀가 후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손으로 만지지 않기
- o 의료기관 출입 전, 진료를 마친 후에는,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o 접수, 대기시 사람간 거리 2m(최소 1m) 유지하기
- ㅇ 기침,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) 등 자 제하기

(3) 병·의원 방문 후

- ㅇ 귀가 후 마스크를 벗고, 손 씻기(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또는 손 소독제 이용)
- 2. 면회(면회자) ※ 면회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
- ㅇ 방문면회는 자제하고 전화, 영상통화 등의 방법 활용하기

- o 불가피하게 면회 시, 면회 인원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면회를 끝내기
- 면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
- 방문객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및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 험요인이 있는 경우 방문을 하지 않기
- * 해당 의료기관의 면회에 관한 내규가 있는 경우 사전에 확인하기
-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환자 방문 전과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환자와 2m(최소1m)이상 거리를 유지하고,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기

Ⅱ. 일 상(8. 에어컨 사용할 때)

8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에어컨 사용

① 일반원칙

- o (기본 방향)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,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
- o (환기)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자주하기
- o (풍량)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, 바람의 세기를 낮 춰서 사용하기

2 다중이용시설 사용시

- ㅇ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,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
- ㅇ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,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
- o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 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
- ㅇ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자연환기가 가능하면 병행하기
- ㅇ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게 하며,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하기
- o 에어컨의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기
- ㅇ 에어컨 필터는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
- o 에어컨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,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 하에 실시하고,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
- ㅇ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
-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,
- 시설 내의 소독을 자주(최소 일 1회 이상) 실시하며,
-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, 출입관리를 강화하기
- ③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경우,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

Ⅲ. 여 가 (1. 여행할 때)

1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호텔·콘도업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·실내체육관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연회 행사 후 소독 및 환기 실시(일시·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)하기
-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
- ㅇ 투숙객 이용 후 객실 창문을 열어 환기, 화장실 등 객실 청소, 소독하기
- o 개인 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·안내하기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폐·실내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1-2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유원시설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실내 휴게실, 카페,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ㅇ 관람객과 신체접촉
- o 탑승 전후 유기기구(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) 소독 실시하기
- ㅇ 직원들이 휴게실,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시간 차이 두기
-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
- o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, 구역별 입·퇴장시간 구분,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
- ㅇ 유기기구 탑승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안내
- o 줄서는 장소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(최소 1m) 이상 가격으로 위치 표시하여 안내하기
- ㅇ 대규모 행사, 공동 활동 등 최소화하기
- o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(한 방향 보기, 띄워 앉기 등) 유도하기
-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
- o 개인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· 안내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1-3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야영장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가족 구성원 외 다수 인원의 야영장 방문 자제하며,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
- o 개인 텐트, 글램핑, 야영용 트레일러,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하기
- o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, 공용 개수대,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 이용 시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자주 사용하기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사업주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(글램핑, 야영용 트레일러) 및 공용시설 (취사장, 샤워실, 화장실 등) 수시 소독 및 환기 실시(일시·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)하기
-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하기
-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일 이용객수를 제한하여 야영지 내 공간 확보하기
- o 야영객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하기
- o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, 공용 개수대,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에 이용객이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시설 배치하거나 표시하기

1-4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동물원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입장권 구매 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
- o 관람 시 동물과의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 및 접촉 전·후 즉시 손 씻기·소독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를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1. 관람자 안내 및 캠페인(현수막, 포스터 부착 및 안내방송 송출 등)
- o 관람객 동물 접촉 자제 및 접촉 전·후 즉시 손 소독하기
- ㅇ 인기동물 우리 또는 식당 등 주요 밀집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
- ㅇ 입장권 구매창구 관람객 밀집 방지를 위해 현장구입 보다 사전예매 독려하기

2. 동물감염 예방관리

- ㅇ 관리자(사육사, 수의사 등) 동물 접촉 시 마스크 및 장갑 등 방역장비 착용하기
- 관리동물 감염여부 예찰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전파하기 (동물원 관리자 → 지자체 → 환경부)

3. 운영 및 시설관리

- ㅇ 인수공통 감염병 보유가능 동물종에게 관람객 먹이주기 체험 및 접촉 차단하기
- o 관람 동선을 따라 2m(최소 1m) 간격의 바닥 표시물 부착으로 사람 간 간격 유지 유도하기
- o 구역별 입·퇴장시간 설정,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
- ㅇ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, 이벤트 등 개최 자제하기
-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
- ㅇ 직원들이 휴게실,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시간 차이 두기
- ㅇ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2m(최소1m)간격 유지 안내하고 단체 식사 제공 금지하기
-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1-5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국립공원

□ 이용자·탐방객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, 직원 안내에 적극 협조하기
- ㅇ 단체 방문(산행)을 자제하고 탐방 인원은 최소화하기
- o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
- ㅇ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고 음식 나눠 먹지 않기
- ㅇ 대피소,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아래 사항에 협조하기
- 출입 전 직원 안내에 따라 체온 측정하기(37.5℃ 이상 시 출입 금지)
- 출입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이 자제하기
-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시설물 예약하지 않기
- 시설 내 공용구역(화장실, 샤워실 등) 차례대로 이용하기(타인 접촉 최소화)
- ※ 그 외 시설내 식당·카페, 숙박시설·야영장 이용시 관련 지침 참고 준수

② 시설운영자·관리자

[공통사항]

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간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- ㅇ 각 사무소에서는 방역관리자*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하기
 - * 자체 점검표 활용(홍보. 환경 위생 관리 분야 이행 여부 확인)
- 의심환자(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)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(시·도, 시·군·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)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하기
- 탐방객 중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하기

2. 감염병 예방 홍보

- ㅇ 탐방 거리두기 홍보(현수막, 문자전광판, 안내방송 등)하기
- 주요 밀집장소(쉼터, 정상부 등): 2m 이상 거리두기, 오래 머무르지 않기, 마스크 착용하기
- 탐방로: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고 우측통행하기
- 공용공간(화장실, 탐방지원센터 등): 손 소독(손 씻기),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개인 위생수칙 홍보(현수막, 문자전광판, 안내방송 등)
- 손 씻기,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기

-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 사용 후 공원 출입하기
- o 체온 측정 안내 현수막 게시, 관리인력 확보 및 어깨띠 부착, 체온측정 독려 확성기 안내 방송하기

3. 환경 위생 관리

- ㅇ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(알코올 70% 이상) 비치하기
- ㅇ 화장실 내 손 세정제(액체비누)와 종이타월 등 충분히 비치하기
- ㅇ 주요 공간의 청소, 다중이용시설(화장실 등) 소독 및 주기적 환기하기
-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* 착용하기
- * 일회용 장갑,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 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.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착용
-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(문 손잡이, 난간, 스위치 등)에 대한 소독 강화하기
- 알코올(70% 에탄올), 희석 차아염소산나트륨(500~1000ppm)등 소독제 묻은 천으로 닦기

4. 탐방객 대응

- 마스크 착용 및 탐방객 응대 시 안전거리(2m(최소 1m) 이상 이격하기, 한 줄 통행) 유지하기
- ㅇ 사무소 복귀 시 개인위생 철저(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하기)하게 지키기
- ㅇ 식사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(한 방향 보기, 띄워 앉기) 유도하기

5. 대피소, 야영장, 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·관리

- ㅇ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자는 시설 이용 금지하기
- o 야영장 또는 대피소 등에 자리를 배치할 경우 서로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하기
- o 공용구역(화장실, 샤워실 등)에 건강거리 유지를 위해 사람들이 몰려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
- ㅇ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실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 자제하기
- o 탐방객 이용시설은 시간당 최소 2회, 1일당 최소 2시간 이상 환기 실시 및 1일당 최소 1회 이상 소독하기

1-6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해수욕장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- ㅇ 동호회, 단체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
- o 개인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
- ㅇ 해수욕(물놀이, 백사장 활동)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
- ㅇ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,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
- 0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기
- o 탈의실,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,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, 대화를 자제하며,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 하는 등 거리두기 유지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, 공용화장실, 야영장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□ 감염병 예방 홍보

- ㅇ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(현수막, 문자전광판, 안내방송 등)하기
- ㅇ 개인 위생수칙 홍보(현수막, 문자전광판, 안내방송 등) 하기
- 손 씻기,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등

□ 환경・위생관리

- o 백사장, 물놀이 구역 등 해수욕장 주변에 이물질이 없도록 관리하기
- ㅇ 쓰레기(음식물 포함) 집하장은 충분히 설치하고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비우기
- ㅇ 관리사무소, 진료시설, 화장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

- o 관리사무소, 진료시설, 화장실, 샤워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화기하기
- ㅇ 수상오토바이, 구명보트, 구명튜브, 감시탑 등 안전시설과 장비는 매일 소독하기
- 튜브, 구명조끼, 파라솔, 평상 등 해수욕장에서 대여하여 이용하는 물품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소독하기

□ 기타 운영·관리

- o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(파라솔, 그늘막 텐트)은 사면을 개방하고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기
- ㅇ 탈의실, 샤워실 등 부대시설 소독 철저히 하기
- o 안전관리요원은 근무교대 시 발열 검사(최소 1일 2회 이상) 실시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
- ㅇ 관리사무소, 진료시설에 방문하는 이용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및 발열검사 실시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, 공용화장실, 야영장 등이 있는 경우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Ⅲ. 여 가 [2. 여가 등]

2-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야외 활동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놀이공원, 관광지 등 입장권 구입 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
- o 많은 인원이 밀집한 장소는 출입 자제하기
- ㅇ 이동할 때에 맞은편에 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

2-2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공중화장실 등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ㅇ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다수가 이용하는 곳가임을 고려하여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철저히 준수하기
- ㅇ 대변기 칸 내 사용 시,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
- 사용 후 발생하는 휴지 등의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, 변기에 넣을 수 없는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

② 책임자·관리자

[공통사항]

-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□ 소독 등 방역관리

ㅇ 곳중화장실 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지키기

□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

- ㅇ 공중화장실 시설 내 외에 대해 소독 등 방역 수시로 실시하기
- ㅇ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기
- o 천(타올)에 소독제(알코올,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(500~1000ppm)등)를 충분히 묻힌 후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*를 지속적으로 닦기
 - * 출입문 손잡이, 스위치, 변기커버 및 뚜껑, 물내림버튼, 세면대, 수도꼭지, 손건조기, 기저귀교환대, 장애인손잡이 등
- ㅇ 바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하여 소독하기
-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 하지 말 것
- ㅇ 소독 후에는 충분이 건조된 후 개방하기
- o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소독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나 안전띠를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

□ 위생 및 시설관리

-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비우기 (휴지통 추가 비치)
- o 공중화장실 등 주요 설비(소변기·대변기·세면대 기저귀교환대·손건조기 등)의 주기적 청소 및 관리하기

- ㅇ 공중화장실내 설비가 고장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관리 하기
- 환자 노출이 된 공중화장실 등은 본 안내서에 따라 소독을 실시 한 후 소독 제의 종류별 특성 및 사용여건(주변 화장실 유무 등)을 고려하여 사용재개
 ※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

□ 홍보관리

- ㅇ 공중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관리 홍보 실시하기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, 화장실 깨끗하게 이용하기, 공중화장실 내 마스크 착용, 2m(최소1m) 간격으로 줄서기, 변기 뚜껑 닫고 물내리기, 의 심증상자 이용 자제 요청 등 하기
- 화장실 줄서기 중 2m(최소1m) 간격이 유지되도록 바닥 표시하기
- * 표시가 어려운 경우, 출입구 또는 바닥 등에 줄서기 간격 안내문구 부착 권고
- 출·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대 설치 (출입구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권고)하기
- ㅇ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관리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교육 홍보하기
 - * 불필요한 집합교육은 지양하고, 문서 등을 통하여 추진

2-3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01·미용업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직원이 소독·청소·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,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
- ㅇ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간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시설(의자, 침대 등)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으로 두거나, 1칸 건너 사용하기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
2-4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목욕업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o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직원이 소독·청소·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,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
- ㅇ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간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ㅇ 수시로 환기하기(특히 핀란드식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)
 - * 소독·청소·환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잘 보이는 곳에 공시할 것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
2-5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도서관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큰소리 대화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실내 휴게실, 카페,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
- ㅇ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·기기(출입구 손잡이, 컴퓨터 등)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
-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
- ㅇ 직원들 대면 최소화를 위해 식사시간 등 차이 두기
- ㅇ 대규모 행사 및 공동 활동 등 자제하기
- 교육·행사를 자제하되, 교육·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 안전거리 2m(최소 1m) 유지를 위한 방안(책상간격 조정 등) 마련하기
- o 노트북,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
-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· 안내하기
-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병 설치하기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2-6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공연장

Ⅱ 이용자·관람객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
-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
- ㅇ 실내 휴게실, 카페, 매점 등 다중이용공가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
- ㅇ 공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
-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
- ㅇ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ㅇ 매표원은 수시로 손세정(위생장갑 착용시 수시로 교체) 사용하기
- o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 유지하기(최소 2m)
- ㅇ 공연 후 충분히 화기를 실시하고 객석, 무대 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기
-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
-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· 안내하기
- ㅇ 공연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
- o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 조치하기
- ㅇ 실내 휴게실, 카페,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
-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
-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2-7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영화상영관

□ 이용자·관람객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
-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
- ㅇ 실내 휴게실, 카페, 매점 등 다중이용공가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
- ㅇ 영화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
- ㅇ 영화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
- ㅇ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ㅇ 매표원은 수시로 손세정(위생장갑 착용시 수시로 교체) 사용하기
- o 상영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좌석 팔걸이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반드시 소독하기
- ㅇ 대규모 인원참석 홍보(프로모션) 행사 자제하기
-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· 안내하기
- ㅇ 상영관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
-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 조치하기
- ㅇ 실내 휴게실, 카페,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
-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
- ㅇ 영화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2-8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박물관 · 미술관

□ 이용자·관람객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o 전시 관람,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
- ㅇ 실내 휴게실, 카페, 매점 등 다중이용공가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
- o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(최소 1m)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
-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
- o 교육·행사를 자제하기
- 노트북,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
- ㅇ 직원 휴게실, 탈의실 등 공용구역 사용시간 차이 두기
- o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·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,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유사시 대비하기
-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· 안내하기
-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2-9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야구장·축구장

□ 이용자·관람객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
- ㅇ 경기장 내 모여서 음식물 취식 자제하기
- ㅇ 운동용품, 응원도구,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
- 0 탈의실,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
- ㅇ 경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주용
- ※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ㅇ 선수단 숙소 체류 시 수시 발열검사 및 문진 실시하기
- o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·종사자 독립된 공가 마련하기
- o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등 경기장 내·외부, 선수단 락커, 숙소 등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 철저히 하기
- o 개인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(전광판 홍보, 안내요원 교육 등)하기
-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, 구역별 입·퇴장시간 구분,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
- o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 및 행사(손뼉맞장구(하이파이브), 사인회, 악수회 등) 자제하기
- o 시설 내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 기침이나 재채기 후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도록 하기
-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- ※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

2-10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노래연습장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로 사용하기
-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o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2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, 마이크, 리모콘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
-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아내하기
- ㅇ 마이크 커버름 충분히 비치하기
- ㅇ 실내 휴게실, 카페,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
-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o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하도록 안내하기
- ※ 시설 내 음식점·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

2-11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실내체육시설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운동복, 수건 및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권고하기
- ㅇ 탈의실,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
- ㅇ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
-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o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협조하기
- ※ '실외 체육시설'은 동 지침 준용

②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

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체육지도자, 강습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지도 및 신체접촉 자제하기
- 운동복, 수건, 운동장비(개인별 휴대가능용품)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,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
- ㅇ 탈의실(락커룸), 샤워실, 대기실(휴게실) 등 부대시설 소독 철저히 하기
-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
-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적정 간격 유지 될 수 있도록 입장 인원 관리하기
- ㅇ 탈의실(락커룸), 샤워실, 대기실 등 부대시설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
- ㅇ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,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
-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(GX류) 자제하되, 실시할 경우 적정 간격 유지(2m) 등 방역 철저히 지키기
 - * GX(Group Exercise) : 줌바. 태보. 스피닝 등
-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하도록 안내하기

※ '실외 체육시설'은 동 지침 준용

2-12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피시(PC)방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좌석은 한 칸 띄워 앉기
-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o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협조하기

2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-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o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, 키보드, 마우스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
-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아내하기
- ㅇ 좌석은 한 칸 띄워 앉도록 착석 안내하기
-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하도록 안내하기

2-13.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: 유흥시설

Ⅱ 이용자

[공통사항]

- o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
- o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
[해당 유형 적용사항]

- ㅇ 유흥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
- o 탁자 사이 간격을 2m(최소 1m) 두고 앉거나,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가격을 띄워 앉기
-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
- 0 식사를 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기
-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
- ㅇ 술잔 돌리지 않기
-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o 출입 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명부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 등 방역에 현조하기

2 책임자·종사자

[공통사항]

o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

- o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-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o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o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
- o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ㅇ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, 탁자,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기
- ㅇ 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
-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- o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- o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
- o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(최소 1m)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,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
-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
-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
- o 개인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
- o 대기자 발생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가 1m가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아내하기
-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, 집게 등을 제공하기
- ㅇ 노래를 부르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손님 변경 시 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
-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,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 - * 고위험군 : 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-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하기
-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(4주 보관 후 폐기)하도록 안내하기